

제 1013 호
1984. 4.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도관
공보관 조남호
전화 : 725-7661-9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례

- ◎ 조 례
 - 제 1877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 3
- ◎ 규 칙
 - 제 2062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5
- ◎ 교육위원회규칙
 - 제 280 호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0

< 이 면 계 속 >

포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349

◎ 훈 령

제 608 호 : 서울특별시경찰제 2기동대운영규정개정규정 11

◎ 고 시

제 158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3
제 16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4
제 16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제 16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제 16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6
제 16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6
제 166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8
제 167 호 : 돼지고기연등가격고시 18
제 168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지적승인 18
제 16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19
제 170 호 : 광전병예방주사실시 23

◎ 공 고

제 189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계획승립공고 ... 23
제 19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에 따른공람공고 24
제 191 호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창고 및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사무소) 시행계획공람공고 24
제 195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행정처분 26
제 197 호 : 도로공사계획..... 26

◎ 사 령

조 례

서울특별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4.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 1877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통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사업 추진 형편에 따라 2개통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자대상)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영세민 집단 지역 등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용자대상마을로 하되,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회장 (이하 "지부장"이라 한다) 또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구지회장과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 당해 주민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원이 빈약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제 3 조 (용자대상사업) ①용자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하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업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

②용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용자금의 한도액은 마을당 1억원 범위이내로 하고 가구당 용자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용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 5 조 (용자금 대부기간)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지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용자금의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대표와 동장 공동명의 (가구의 경우 개인 명의)의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시지부회장 또는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용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금의 용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때
- 2.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때

제 8 조 (특별회계)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 9 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용자금과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한 비용으로 한다.

제 10 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용자를 받은 마을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시지부회장 또는 구지회장과 수시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이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권한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용자대상 마을의 선정, 용자금 대부, 상환금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규칙 관리조례 시행을
이에 공포한다.

1984.4.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2062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부신청)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자금 (이하 "사업자금"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마을대표 또는 가구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금 대
부신청서 (별지 제 1 호 또는 제 2
호서식)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대보증서 (별지 제 3 호 또는 제 4 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제 5 호 서식) 1부 (마을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 3 조 (대부 결정) ①사업자금 대
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새마
울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구
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
다)과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
여 소득이 낮은 마을순으로 선정
한다 (기용자 받은 마을은 제외)
②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이 의하
여 결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동장을 경유하여 해당마을과
개별 신청 가구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급) ①마을대표와 가구주
는 제 3 조 제 2 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구청장에게 용자금 지급신청
서를 (별지 제 6 호 또는 제 8 호 서
식)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된 용자금 구
령 통지를 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적합 수평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부기간 연장) ①용자금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 및 가구주는 기한만료 30 일
전에 용자금 대부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 7 호서식)를 동장을 경
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
은 구지회장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 2 호서식)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대부신청서

경 유

동장 인

- 1. 용자 신청인
 - 본 적
 - 주 소
 - 가구주 성명
- 2. 신청금액
- 3. 용자금 사용계획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상환방법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2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을 대부 신청한다.

198

신청인 가구주

○ ○ ○ 구 청 장 귀 하

첨부 1. 본인주민등록등본 1 통 2. 연대보증서 및 보증인 인감

(제 3 호서식)

보 증 서

금번 서울특별시에서 특별 대부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으로 마을주민들이 협동 단결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동 용자금에 대하여는 상환 기일내에 책임 변제할 것을 사업 참가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증한다.

198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 구 청 장 귀 하

첨부 1. 인감증명서 통

(제 4 호 서식)

보 증 선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이 신청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하여 차용인이 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변제할 것을 보증 한다.

198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 ○ ○ 구 청 장 귀하

(제 5 호 서식)

새마을소득사업계획서

1. 마을현황

○ 특 징

가구주 (세대주)	유 허 가	무 허 가	자 가	전 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소득수준 (월평균)

2. 소득사업계획

○ 사업명

○ 사업참가 세대수

○ 소요예산액 (총액 : , 대부액 : , 자체조달 ,)

○ 예상소득 현황

○ 운영계획

(제 6 호 서식)

용자금지급신청서

마을명 : 동 마을 (통)
신청금액 :

서울특별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한다.

198 . . .

(위 신청인)

○○동○○마을(통)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추진 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 ○ ○ (인)
위원 (통 장) ○ ○ ○ (인)
동 장 ○ ○ ○ (인)

○ ○ ○ 구 청 장 귀하

(제 7 호 서식)

용자금대부기간연장신청서

1. 마을명 (가구주)
2. 대부금액 :
 - 대부총액
 - 상환금액
3. 당초사용기간 :
4. 연 장 기 간 :
5. 연 장 사 유 :

서울특별시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 5 조 및 동 규칙 제 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 기간을 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198 . . .

위 신청인 :

○ ○ ○ 구 청 장 귀하

(제 8 호 서식)

용자금 지급 신청서

신청금액

서울특별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한다.

위 신청인

○ ○ 구 ○ ○ 마을 (통)

신청인 가구주 ○ ○ ○ ㉞

○ ○ ○ 구 청 장 귀하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
계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1984 . 4 .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규칙제 280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8 조 제 3 항 제 3 호 중 “ 200 제
곱미터 이하의 ” 를 “ 200 제곱미터
이하까지의 사유건물로 점유된 ” 으

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 128 조의 4 중 “ 변상금 ” 을 삭제
한다.

제 129 조의 5 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상금은
200 제곱미터 이하까지의 사유건물
로 점유된 잡종재산인 토지를 대
부 또는 매각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 128 조
제 3 항 제 3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

는 교육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29조의 5 제 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부 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중이거나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시행전에 납부한 변상금중 이 규칙에 의한 변상금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부 또는 매각대금의 잔금의 범위내에서 제 63조 제 3호, 제 63조의 2 및 제 6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대체 정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상금이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제 2기동대 운영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4. 4. 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훈령제 608 호

서울특별시경찰제 2기동대운영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경찰제 2기동대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 2기동대 (이하 "제 2기동대"라 한다)의 편성, 임무 및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각종 경비·상황의 효율적 예방과 진압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제) 제 2기동대는 무술 특수 중대로서 중대본부와 3개소대로 편성하고 중대장 (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경감으로, 부관 및 소대장은 경위로, 분대장은 경사로 보한다.

1. 중대본부에는 대장 1명, 부관 1명, 행정요원 3명 (경사 또는 경장, 순경)으로 편성한다.
2. 1개 소대는 50명으로 하고 4개분대로 편성한다.
3. 1개분대는 12명으로 하고 3개조로 편성한다.

제 3조 (임무) 제 2기동대의 임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범죄 예방 진압 및 검거
2. 각종 경비 및 경호
3. 기타 경찰국장 (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업무

제 4 조 (지휘관의 자격) ①대장은 무술유단자로서 책임감이 왕성하고 지휘통솔에 유능한자로 선발한다.

②부관및 소대장은 무술 유단자로 선발한다.

제 5 조 (대원의 자격) 대원은 책임감이 왕성한 경찰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춘자 중에서 선발한다.

- 1. 연령 40세 미만인자
- 2. 신장 165cm, 체중 55kg이상인자
- 3. 태권도, 유도, 검도등 무술특기 3급 이상인자
- 4. 기타 운동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자

제 6 조 (복무기간) ①복무기간은 만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위급 이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복무기간이 끝나 교체된자는 제 1기동대에서 1차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체) ①복무기간이 끝났거나 다음 각호의 경우로 결원이 생겼을 때 교체한다.

- 1. 타, 시도 전출
- 2. 퇴 직
- 3. 중환자, 질병자 (국립경찰병원 진단서 첨부)

②대장은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국장 (경비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교체방법) 대원의 교체는 경비과장의 제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때에 전원을 교체할 수 없다.

- 1. 정기교체 : 년 2회 (2월, 10월)
- 2. 수시교체 : 제 7조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제 9 조 (교체인원차출) 대원을 교체하고자 할때에는 경위급 이상은 경찰국에서 선정하고 경사기차는 각 경찰서에서 후보자 명단을 심사 2일 전까지 경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선발심사) 정기교체 및 결원충원에 따른 대원의 선발심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 1. 심사관 : 경찰국 경무과장이 심사관정관이 되며, 경무담당, 경비담당, 대장, 무술사범 (2명) 이 보좌한다.
- 2. 심사요령 : 선발심사는 심사표 (별지) 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3. 심사결과통보 : 선발 심사에 합격된자의 명단은 경비과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 및 감독) 제 2기동대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소집 운영하고 지휘감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경비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제 2기동대의 조직, 교육, 훈련, 보급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독한다. 2. 대장은 차상급 지휘관의 경계 따라 대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부 직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별지)

실 사 요

소 속	과 서		계		과 출 소	
계 급	성 명		년 령	단	세	
신 장		cm	체 중		kg	
실 사 사항	특 기	유 도	단		급	
		대 련 도	단		급	
		검 도	단		급	
		기 타				
	신 체 면					
정 신 면						
관 정	가			부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58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2 호 (83.5.11) 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허가된 강동구잠실동 40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25 조 및

심 판 관 인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장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강동구잠실동 40 번지.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시장) 변경 시행허가 한양유통</p> <p>다. 사업규모 당초 : 4,899㎡ (지상 1, 2층의 일부) 변경 : 7,132.26㎡ (지상 2층에 2,233.26㎡ 증가)</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 3동 40번지 한양유통(주) 대표이사 남 옥</p> <p>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p>	<p>착공일 : 허가증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p> <p>준공일 : 84.12.31</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경세서 : 별항</p> <p>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p>
--	--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강동구잠실동 40	대	23,971.8	서울특별시	한양유통(주)남옥	시유재산매매계약

○시행허가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55호(83.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된 삼육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4.2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공릉동 26-20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 명칭 : 삼육대학 시설확충

다. 사업시행규모

- (1) 시행면적 : 146,695㎡
- (2) 사업내역
 - 건축면적 - 6,456.78㎡
 - 연면적 - 20,305.77㎡
 - 동수 - 8동 신축
 - 동별층수 및 면적
 - 도서관 : 지하 1층, 지상 3층 (연 6,025.2㎡)
 - 실습장 : 지하 1층, 지상 2층 (연 1,778.7㎡)
 - 기숙사(2동) : 지하 1층, 지상 3층 (연 3,269.6㎡)
 - 강의실(2동) : 지하 1층, 지상 3층 (연 6,475.7㎡)
 - 학생휴게실 : 지하 1층, 지상 3층 (연 1,276.79㎡)
 - 교수연구실 : 지하 1층, 지상 3층 (연 1,479.78㎡)

라. 사업시행자주소 : 동대문구회기동 66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전 병 덕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86.12.31
 바.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사용할 토지 : 별첨 (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삼육학원
 (수용할 토지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건설부고시 제 318 호 (73.8.1) 로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37 호 (73.8.16) 로 지적승인된 성동구자양동 220-124 호전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4.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자양동 220-124 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전국대부속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다. 사업의 규모
 시행면적 - 1,339.88 ㎡
 기존건축연면적 - 6,493.95 ㎡
 증축분 ' - 631.45 ㎡ (5층단일부층추)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명칭 : 학교법인 전국대학원 이사장 유 승 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84.4 , 준공 - 85.5.1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생략

사.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경면도 및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2 항의 관계인의 주소, 명칭 : 별첨 생략

자. 기타 의문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445-8705) 로 문의바라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16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0 호 (82.3.3) 및 제 97 호 (82.3.5) 호로 시심결정 및 지적고시된 상월동 35-1 번지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을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4.4.3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35-1
-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시행 서울천미국교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6,473 ㎡ (1,958 평)
- (4) 사업의 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시행인가후 1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 (6) 사용할토지 : 별첨토지 조서(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호 (84.1.12) 및 동고시 제 50호 (84.1.27)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북구 석관동 261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4. 3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61번지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명칭 : 실내체육관 (콘서트) 증축공사
- 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실내체육관 증축 306 ㎡
- 라. 사업의시행자 주소성명 : 성북구석관동 261 학교법인 국악학원이사장 임동권
-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년월일
 착공 : 허가일로부터 10 일 이내
 준공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바. 사용할 토지 : 별첨조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8호 (84.3.12) 로 공고한 남부순환도로 - 강서로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4. 3

서울특별시장

“고시 개요”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고척동 191-2
 2. -개봉동 92-3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부순환도로 -강서로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 = 20m
 L = 1,270 m
 B = 15 m ; L = 36 m
 B = 10 m ; L = 50 m
 B = 8 m ; L = 18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 성명 : 별첨토지, 건물조서
 첨부 : 토지 및 건물조서 1부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동명	지번					이해관계인주소성명		
1	고척동	194-20	대	164	164	도로	서대문구북아현동159-11	윤인	
2	"	194-25	도로	16	16	"	강남구마천동 296	이태균	
3	"	194-14	담	20	20	"	오류동 172	정공현	
4	"	192-3	"	149	149	"	성북구장위동 140-24	송호진	
5	"	192-2	"	13	13	"	"	"	
6	"	160-41	"	11	11	"	고척동 168	김점훈	
7	"	160-27	"	7	7	"	"	진석호	
8	"	160-28	"	122	122	"	성북구장위동 140-24	한정희	
9	"	160-29	"	7	7	대지	광명시광명동 87-11	박익교	
10	"	160-37	"	69	69	"	고척동 160-4	최병훈	
11	"	158-2	"	199	199	도로	천왕동 1-32	윤외순	

건 물 조 서

번호	소재지		건물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동명	지번					이해관계인주소성명		
1	고척동	160-2 160-9	창고	세멘트벽 스레트층	1층 5.5㎡	창고	광명시광명동 87-11	박익교	

<p>◎서울특별시고시제 166 호</p> <p>도시 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건설부고시 173 호 (82.4.28), 같은고시 227 호 (83.7.6) 및 같은고시 423 호 (83.12.23) 로 결정, 변경 결정된 신천공원, 노고산공원, 및 원서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제 2 항, 같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조서</p>	<p>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및 제 9 조 제 4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지적승인 고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동사무소에 두고서 일반인에게 복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4. 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	--

공 원 종 류	공 원 이 름	위 치	면 적 (㎡)
도시근린공원	신천공원	강동구 신천동 7-15	12,755.5
"	노고산공원	마포구노고산동산 2 - 2일대	53,002
"	원서공원	종로구원서동 206-4 일대	8,950

<p>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과 같음.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p> <p>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p> <p>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561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4. 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육류연동가격</p>	<p>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1,900원</p> <p>2. 시행일 : 1984.4.6 부터</p> <p>◎서울특별시고시제 168 호</p> <p>도시계획응도지구 (미관지구)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82.4.22) 로 실효 및 결정된 도시계획 응도지구 (미관지구)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 아래와</p>
--	--

같이 지적승인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및 이해관계인에 보인다.
 1984.4.4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지적승인 조서

번호	종별	연장(m)	면적(m ²)	위 치	지적고시구간	비 고
48	2층	(5,900) 3,210	(141,600) 77,040	명일동-가락동	명일동	
65	4층	(2,200) 2,200	(52,800) 52,800	암사동-하일동	암사동-하일동	
61	4층	(1,600) 874	(38,400) 20,976	거여동-마천동	거여동-마천동	
76	4층	(1,900) 312	(45,600) 7,488	삼전동-가락동	가락동	
3	4층	(4,600) 2,216	(110,400) 53,184	석촌동-장지동	송파사거리-장지동	84.1.31 면적착오고시
3	4층	(4,600) 2,216	(110,400) 26,592	석촌동-장지동	송파사거리-장지동	면적정정고시분
3	4층	(4,600) 2,216	(110,400) 26,592	석촌동-장지동	" "	금회고시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419(83.12.23)호로 시설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 698(83.12.26)호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봉천동 산복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등 시행령 제 26조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 실시 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람토록 한다.

1984.4.6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5동 산 101-95- 산101-302 번지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봉천동 산복도로 개설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 B = 6 m L = 225 m ○ 콘크리트포장 (T=20cm) A=11.8 a ○ 용벽설치 (H=2-7m) L=222 m ○ 하수도 (D = 300 - 600 mm) L = 287.5 m</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 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 착공 : 시행인가일로부터 15 일 이내</p> <p>○ 준공 : 인가일로부터 84.12. 31. 한</p> <p>바. 수요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사. 토지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 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p> <p>아. 시행인가설계도서 : 별첨 (계재생략)</p>
---	--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 의종류 및 내 용	비고
				관	계 인 주소 성명		
1	봉천동 산 101-320	임야	28	구로구 독산 4 동 1022-64	점재룡	가등기자	
2	" 101-323	"	17	용산구 동빙고동 310-27	하재구 (주)대원주 택		
3	" 101-324	"	48	부천시 동구좌천동 832-6	정종화		
	" "	"		봉천동 산 101-103 가든주택 101호	정복택	근저당	
	"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 "	"		동작구 상도동 214-23	점성룡		
	"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설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비고
				관제인 주소 설명	내	
	봉천동산 101-324	임야		봉천동산 101 가든주택 104 호	이신희	근저당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 909-29	김영수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2 가든주택 106 호	이주석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 가든주택 202 호	박용구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구로구고척동 263-5	문수정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 번지 103 가든주택 204 호	윤진원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103	차영일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2 가든주택 206 호	이재화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103	정기섭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103	김경중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103 가든연립동 303호	이문석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103 가든주택 304호	박연섭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봉천동산 101-103 가든주택 305 호	오정숙	
	"	"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		

연 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 종류	이 의 용
				관 제 인	주 소 성 명		
4 5 6 7 8 9	봉천동산 101-324	임야		봉천동산 101-103 가든주택 206호 한국주택은행봉천동지점 구로구시흥동 974 무궁화연립동 302 봉천동산 101	홍 학 규	근 저 당	-
	"	"	6	강남구삼성동 104-3 이화주택 206호	장 홍 욱		
	봉천동 산 101-322	"	117	"	박 장 수 욱		
	산 101-321	"	13	종로구명륜동 2가 197-1	문 영 표		
	봉천동 487-5	대	47	영등포구시흥동 533	김 설 금		
	산 101-317	임야	973		시		
	산 101-110	"	101		이		
	산 101-328	"					
	계			(사유지 (7) 필지 시유지 (2) 필지	276㎡ 1,074㎡		

건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구 조	건 물 (유.무)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
					관 제 인	주 소 성 명	
1	봉천5동	산 101번지 (29/2)	새 면 조	무허가	봉천5동산 101번지	장성만	
2	"	" (28/2)	기와/부러	"	"	박태규	
3	"	" (30/4)	벽 돌	"	"	김성식	
4	"	" (28/2)	판 자	"	"	최종선	
5	"	" (28/1)	루 평	"	"	이병열	
6	"	" (28/1)	"	"	"	장정식	
7	"	" (28/3)	"	"	"	최상준	
계				7 동			

◎서울특별시고시제 170 호

광견병예방주사 실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4.4.7

서울특별시장

- 1. 실시목적 : 광견병 예방
- 2. 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3. 실시기간 : 84.4.16-5.31 (46일간)
- 4. 실시대상 : 축견 (개)
- 5. 기타사항 : 본 기간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축견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89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계획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57 호 (79.9.6) 및 동고시 제 480 호 (78.9.15)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북구 정릉동 820-18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 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4. 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정릉동 820-1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명칭 : 등양교동 (주) 는

축 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지하 1 층, 지상 3 층, 옥탑 연면적 1,036 ㎡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성북구 정릉동 771-7 등양교속 (주) 김 기 현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 년월일
착공 : 허가일로부터 50 일 이내
준공 : 착공일로부터 9 개월

바. 사용할 토지 : 별첨조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9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 허가
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1 호 (77.4.11)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동고시 제 65 호 (84.2.6)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 허가된 성북구 돈암동 173-1 외 23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길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자 이를 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4. 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성북구 돈암동 173-1 외 23 필지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
사업의 명칭 : 성신학원 초, 중교 특별교실 증축 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당 초 국민학교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17 ㎡)

중학교 :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연면적 6,558 ㎡)

특별교실 : 지하 1층, 지상 6층, 옥탑 (연면적 5,679 ㎡)

도서관 : 355.5 ㎡

변경 국민학교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17 ㎡)

중학교 :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연면적 6,558 ㎡)

특별교실 :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연면적 6,138 ㎡)

도서관 : 355.5 ㎡

(4) 사업의 시행자 주소성명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73-1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리숙중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허가후 30 일 이내
나. 준공 : 1985.12.31

(6) 사용할 토지 : 별첨 조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91 호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 참고 및 자동차 운송사업에 공하는 사무소)
시행 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 호 (84.1.4) 로 개포지구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유통 단지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승인된 내역중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

창고 및 자동차 운송사업에 공하는 사무소)인 개포 택지 개발사업지구 B3 구획 - 1호 (강남구 양재동 557번지의 외 23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제 25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4. 3
서울특별시강

가. 사업시행기: 서울특별시 개포 택지 개발 사업지구 구획 - 1호 (강남구 양재동 557번지의 외 2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유동업무설비: 창고 및 자동차 운송사업에 공하는 사무소) 시행

다. 사업의 규모
(1) 대지면적 - 28,551.4 ㎡
(2) 건축면적 - 7,518.37 ㎡
(3) 건축연면적 - 12,175.32 ㎡

세 부 시 설 조 서

단위: ㎡

시 설 명	규 모		비 고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창 고	1,246.25	2,339.2	자동차부품보관 및 저장
사 무 실	1,207.8	1,207.8	
부대시설 (주차장)		4,395	육 외
" (차량정비점검)	4,705.24	1,705.24	
" (주유시설)	317.6	317.6	
" (종업원식당등)		3,024	후생시설 포함
" (기 타)	41.775	581.48	

라. 사업시행자: 전남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
(주) 광주고속 대표이사 박정구
마. 사업예정기간: 1984.4-1984.12.31
바. 공람기간: 1984.4.7- 1984.4.20(14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아.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p>주소, 성명 : 별첨 (생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 566-8972) 로 문의 바람</p> <p>◎ 서울특별시공고제 195 호</p> <p>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p> <p>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3 조 규</p>	<p>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취 소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4. 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다 음 -

허가번호	업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	처분사유
162	삼흥주물 제작소	용산구 문배동 6-2	권영교	허가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이용합리화 법 제 22 조 제 1 항 위반 (무단폐업) ○ 동법 제 73 조 제 1 항 위반 (83 년 열사용기자 재 생산 및 판매실 적보고 불이행)

<p>◎ 서울특별시공고제 197 호</p> <p>1.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 3 항에 의거 도로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p>	<p>이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 치 열람케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4. 7</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로공사계획조서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서울특별시도	신림 11 동 1564의 2 ~ 신림 3 동 721	신림 11 동미선국교 ~ 대방변전소간도로포장공사	관악구청	84.5 ~ 84.12.31
"	신림 8 동 1646 ~ 1643 의 6 간	강남아파트 ~ 경수국도간 복개공사 (2 차)	"	"
"	신림 6 동 808 지내	신림 6 동 354 주변 하수도공사 (2 차)	"	"
"	신림 4 동 517 의 1 ~ 527 의 2 간	신대방역 ~ 난곡 4 거리간 도로정비공사	"	84.4 ~ 84.5
"	봉천 7 동 207의127 ~ 196 의 46 1636 의 20 ~ 1656 의 28 1642 의 4 ~ 1644 의 37 1655 의 7 ~ 1655 의 9 196 의 62 ~ 196 의 54	봉천 7 동인현국교 주변도로정비공사 주변도로정비공사	"	"
"	신림 5 동 1417 의 35 ~ 1414 의 1 1460 의 1 ~ 1443 의 4 1424 의 23 ~ 1424 의 4	신림 5 동지내 도로정비공사	"	"

사 령

◎ 1984 년 3 월 31 일자

령제 12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병태	대법원 판결 (사건 83 누 730 호 : 1984.3.13) 에 의거 1982. 7.16 자 해임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성복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주사

◎ 1984 년 4 월 1 일자

령제 12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석근	운수 2 과 (교통종합민원신고센터 요원) 파견 (84.4.1-84.4.30)	성복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박문규	"	종로구시 민봉사실	"
윤영진	"	도봉구새 마을과	"
김종혁	"	서대문구총무과	지방행정서기
전하철	"	동대문구신설동	"

령제 12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장병채	서울시설관리공단파견근무 (84.4.1 - 84.4.30)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선우수길	"	"	"
최후복	"	"	"
신태손	"	"	"
백좌현	"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승만	서울시설관리공단파견근무 (84.4.1-84.4.30)	중 구	지방행정서기
주종철	"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보
이양호	"	"	지방행정서기보
정길기	"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주사보
허남대	"	"	지방행정서기
조성소	"	구 로 구	지방행정주사보
주성채	"	"	"
양광석	"	중 구	지방매표원
김영선	"	"	"
백승도	"	"	"
김태환	"	"	"
김경일	"	"	"
이봉남	"	"	"
유정상	"	"	"
노청웅	"	"	"
최순욱	"	"	"
김세영	"	"	"
유병권	"	"	"
김덕수	"	"	"
김명제	"	"	"
장영호	"	"	"
박상우	"	"	"
이범제	"	"	"
박일윤	"	"	"
차영대	"	"	"
성공욱	"	"	"
유재흠	"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정자	서울시설관리공단과전근무 (84.4.1-84.4.30)	중 구	지방대표원
신명진	"	"	"
황종필	"	"	"
최영남	"	"	"
홍기수	"	"	"
김대성	"	"	"
김덕환	"	"	"
안재명	"	"	"
이용해	"	"	"
노광준	"	"	"
김종한	"	"	"
조정식	"	"	"
방승환	"	"	"
민병직	"	"	"
이명재	"	성 북 구	"
안철	"	"	"
안광우	"	"	"
방남성	"	"	"
김종성	"	"	"
하동준	"	"	"
최진환	"	"	"
정영태	"	"	"
정두화	"	"	"
이범구	"	"	"
양봉국	"	서 대 문 구	"
이강욱	"	"	"
김수식	"	"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기영	서울시설관리공단파견근무 (84.4.1-84.4.30)	서 대 문 구	지방대표원
이동권	·	·	·
박상은	·	·	·
김승철	·	·	·
이종춘	·	·	·
정윤철	·	·	·
황보국	·	·	·
성병목	·	·	·
이만공	·	·	·
김천홍	·	·	·
안필순	·	·	·
배명환	·	구 로 구	·
이순택	·	·	·
최영운	·	·	·
김장동	·	·	·
윤병길	·	·	·
김영호	·	·	·
이상열	·	·	·
정수용	·	·	·
신동철	·	·	·
정내욱	·	·	·
이돈삼	·	·	·
임현국	·	·	·
김종욱	·	·	·
김승호	·	·	·
김화전	·	·	·
조계연	·	·	·

◎ 1984년 4월 3일자				령제 12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김정기	내무국인사과	은평구응암2동	지방행정서기	
송창호	교통국운수2과	강동구잠실본동		
유영준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남구대치2동	지방행정서기보	
				령제 1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신형수	지방별정직 6급상당에임함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최명희	지방별정직 7급상당에임함	"	" 8급상당	
황안숙	지방별정직 8급상당에임함	"	" 9급상당	
김은주	"	"	"	
◎ 1984년 4월 6일자				령제 1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고승훈	농촌진흥청파견근무를 명함. ('84.4.6 - '85.12.31)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보	
				령제 13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강영일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를 명함. ('84.4.22 - '85.4.21)	보건환경연구소	지방수의사보	
김광철	"	동대문구	지방보건지원보	
박영식	"	마포구	지방보건지원보	

◎ 1984 년 4 월 7 일자		령제 13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원오	서울특별시 직무대리 규정 제 3 조 규정에 의거 원장 직무대리 (84.4.7-5.10) 를 명함.	공무원교육원교수 부장	지방부이사관
		령제 13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오순천	복직을 명함.	도봉구토목과	지방토목기사보
◎ 1984 년 4 월 1 일자		령제 13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장무	국회사무처 전출을 명함.	마 포 구	지방전기기사
서울특별시장			